

제 319 호

1972. 11. 23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상 배 최
편집 : 부보 신장 김진호
전화 75-7834
주소 : 서울특별시 중랑발전실
전화 75-6444, 6090



차



비

㉠ 조 례

- 제 738 호 남산소유자유차의 과세면제에 관한
특례조례상 개정조례..... 3
- 제 739 호 서울특별시 교통조정심의회원회조례 제 31에
관한 조례..... 3
- 제 740 호 수로행정자문위원회조례상 개정조례..... 4

㉡ 공 고

- 제 265 호 일산의 주택지 조성사업 유공..... 6

1. 서울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서울은 공공서포서의 요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| |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제</p>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장관소유자 농회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 서울특별시장 1972년 11월 22일</p> <p>●서울특별시조례 제 738호.</p> | <p>장관소유자농회와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</p> <p>장관소유자농회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부칙(2) 중 1972년 1월 1973년 1월 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|
|--|--|

조 례 대 표

| | |
|-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부터 시행한다. 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하 통 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</p> |
|---|---|

| |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의 유</p> <p>전우회 장려를 위하여 관공회 공하는 장관소유자농회에 대한 과세면제 기한 을 광민(세정 1234.9-1234.79.10. 25) 내무부장관 제시에 의거 인정 72.12.31에서 73.12.31까지 1년간 더 연장 인제 순시방외로서 광민적인 전우회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하오자함.</p>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교동조정심의회설립조례제정에 관한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. 서울특별시장 1972년 11월 22일</p> | <p>●서울특별시조례 제 739호.</p> <p>서울특별시교동조정심의회설립 조례 제지에 관한 조례</p> <p>1972년 5월 15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 707호로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교동 조정심의회설립조례를 이에 폐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시정방전에 관한 인가허가 신청에 응하기 위한 시정개발담당관제</p> |
|--|--|

| 명 | 명 |
|---|---|
| 7. 양력대학총동맹위원회 8. 사회복귀총동맹위원회 9. 부녀자총동맹위원회 10. 문화대학총동맹위원회 11. 연료대학총동맹위원회 12. 수출진흥총동맹위원회 13. 무역진흥총동맹위원회 14. 교통총동맹위원회 15. 노동총동맹위원회 16. 환경총동맹위원회 17. 심수모총동맹위원회 | 7. 유봉제정기적분과위원회 8. 미로대학총동맹위원회 9. 최신진흥총동맹위원회 10. 교통총동맹위원회 11. 관광총동맹위원회 12. 환경총동맹위원회 13. 심수모총동맹위원회 14. 지하철건설총동맹위원회 15. 이십적회총동맹위원회 16. 노망총동맹위원회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이 유</p> 1. 1972.8.31 자(유칙제1242호)로 시정개발담당위원회, 방송과 문화부의 임 제13호에 의한 문화대학총동맹위원 회의 설치총칙에 따라 총동맹을 담당하는 수출진흥위원회의와 경제개발위원회의를 문화대학총동맹위원 회의와 재단 기계를 중앙관서에서 관장 함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의는 수출진흥위원회의를 이를 폐지하고 2. 상문고 기술이 승차한 환경총동 맹위원회와 양력대학총동맹위원회는 이를 폐합하여 교통총동맹위원회로 하며 3. 부녀자총동맹위원회의 기능을 아동 계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위원회의 하 이 설치 운영하는 아동복지위원회의 의 관장하에 본 기능을 유계 부 | 내 부위원회의로 하고 4. 문화대학총동맹위원회는 유봉제정 전 장래 관한 총동맹적인 분리를 완 고 함으로써 이를 유봉제정 적분 과위원회라 명칭 변경하며 5. 지하철건설에 관한 계획 및 조사 연구를 위한 지하철건설총동맹위원 회의의 설립을 위한 이의 조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십적회 위원회 및 노망정우회 이의 조 노망정우회에 관한 계획 및 조 연구를 위한 노망총동맹위원 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결정 함. |

공 고

1972. 11. 20.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공고제 265호

일반의주택지조성사업공고

1. 서울 도시계획 사업인 일반의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.

2. 관내 도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일동보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급한다.

- 1. 사업정명지 : 서울특별시일동보구청시공
안 17-3화 2필지
- 2. 사업명 : 일반의주택지 조성사업
- 3. 사업면적 : 50,551.6 평
- 4. 사업시행자 : 학의 법학 주머단지
주택조합장 김 철
- 5. 사업기간 : 학공-70. 10.17
준공-72. 4.30.
- 6. 준공년월일 : 1972.11.20.
- 7. 준공도면 : 별첨 (상략)